

대학평의회평의원후보자선출에관한시행세칙

제1조 (목적) 이 시행세칙은 대학평의회 운영규정(이하 '운영규정'이라 한다)에 의한 평의원 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교수회의) ①평교수 평의원후보자 선출을 위한 교수회의는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로 하며, 이 경우 단과대학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각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추천하는 평교수 평의원후보자는 1명으로 한다.

③교무위원급 보직교수 평의원후보자 선출은 교무위원회의에서 추천한 보직교수중 학장회의에서 4명을 선정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

④제2항에 의하여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평교수 평의원후보자 중 4명을 학장회의에서 선정한 후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

⑤각 단과대학 교수회의는 전임교원(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제외)의 과반수로 성립한다. 다만, 정족수 부족으로 2회차까지 교수회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참석 교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평의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
⑥평교수 평의원후보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3조 (직원회의) ①평의원후보자 선출을 위한 직원회의는 총무처장이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직원회의는 재직 직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한다. 다만, 정족수 부족으로 2회차까지 직원회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석 직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평의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
③직원회의에서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운영규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 정원의 2배수를 평의원후보자로 선출한다.

④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후보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무처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4조(준용)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